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문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66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 : 홍문표 • 이명수 • 정진석

이 용・이 영・박범계

조승래 • 유주경 • 문진석

김태흠 • 박영순 • 이종배

정경희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 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새롭게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5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전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혁신도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	제18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
혁신도시 활성화) ① ~ ④ (생	혁신도시 활성화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
	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
	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
	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
	한다.